

2026년 충주시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공고

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「2026년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2. 24.

충 주 시 장

I 사업 개요

□ 지원대상

-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사업장(사업자등록증 상)을 두고 관내 창업

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(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5. 8. 24.이전)

※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(배우자·부모·자녀)이 사업장을 양수받아 영업을 유지한 경우 최초 개업연월일로 인정

※ 1인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

소상공인 기준 :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

-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
-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,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

□ 지원내용

○ 총사업비 : 439백만원

※ 공고일 기준 청년소상공인[19~39세(1986.1.1.~2006.12.31)] 1억원 내 우선 선정

○ 지원규모 : 약 220개소

- 본 사업은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.

○ 지원내용

단위사업	세부 지원내용	지원 한도액
점포환경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옥외간판 교체 : 판형(FLEX 등) 간판 • 인테리어 개선 : 내부 도색, 도배, 장판, 타일, 닥트, 조명 출입문 교체·보수, 바닥 교체 등 • 상품배열개선 : 제품 진열대 · 전시대 • 화장실 개선 :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(공용화장실 제외) • 안전분야 : 소화(화재안전) 설비 • POS 기기 및 프로그램 • 입식환경개선 물품 : 테이블, 의자 	최대 200만원 이내 (공급가액의 80%)
디지털 시스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무인시스템(키오스크), 테이블오더, 디지털메뉴보드 	

□ 유의사항

- 사업신청은 개별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하며, 기관·단체 및 견적업체를 통한 대리신청 불가
- **최대 200만원 지원 (공급가액의 80%)**
- **선정통보일 전에 진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**
- **시설개선비의 20%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, 부가세는 자부담**
(예) 화장실개선 비용이 220만원 (공급가액 200만원, 부가세 20만원)일 경우
→ 지원금액 산정은 **공급가액 200만원의 80%(160만원) 이내 지원, 나머지 자부담**
- **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(임차) 비용은 지원 불가**
(예) PC(노트북), TV, 냉장고, 공기청정기, 냉·난방기(에어컨, 보일러), 커피머신류, 가스레인지, 전자·기계제품 및 가구 집기류, CCTV, 커튼, 블라인드 등
자산성 물품 불가
- **시공업체 유의사항**
 - **충주시 내 소재한 시공업체로 제한(충주시에 소재한 시공업체에서 견적서 수령)**
단, POS기, 키오스크(무인결제기) 업체는 충주시 외 업체 선정 가능
 -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시에는 옥외광고물 등록 업체 선정
간판설치후 청구 시 옥외광고물 표시신고(허가)확인서 또는 비대상확인서 필수 제출
- **신청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.**
- 청년유형 신청시 공동대표일 경우 **모두 청년이어야 함.**
- "지원제외 대상" 목록 참고 유의

□ 선정기준 : 심사기준 배점에 따른 고득점자 순 지원 대상 결정

※ 선정취소·포기 등으로 추가 지원 가능 시 예산범위 내 추가 선정

□ 심사기준(배점)

평가 지표	매출액 (적은순)	영업기간 (오래된 순)	필요성	가점			감점	
				백년가게 지정	착한가격 업소	장애인 편의시설	2022년도 선정자	2021년도 선정자
점수 (100)	50	40	10	5	5	5	-10	-7

※ [감점] 재신청 기한 : 3년이상 4년미만 【2022년도 지원】 (-10점)

4년이상 5년미만 【2021년도 지원】 (-7점)

※ 장애인편의시설 가점 제외 대상

- 임대인이 설치하거나 건물 자체에 기본 시설로 포함된 경우
- 소상공인 명의의 지출 증빙이 가능해야 함

☞ 동점 시 우선선발기준

1. 매출액이 적은 순
2. 영업기간이 오래된 순

지원제외 (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)

-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
-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
- 소상공인점포환경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[붙임2]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(과대·허위견적, 서류 위변조 등)
- 선정통보일 전 전시공한 사업자
- 연간 매출액 10억 이상인 소상공인
- 휴·폐업 중인 사업자, 무점포 사업자, 지방세 등 체납중인 사업자
※ 2년 연속 연매출액(수입액) “0” 원으로 신고된 사업장
-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
-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
- 가설건축물(임시점포, 컨테이너 등)에서 영업중인 사업자
- ‘23년 ~ ‘26년까지 충주시 및 충청북도에서 간판개선, 입식테이블 및 점포환경 개선사업 등을 지원받은 사업자 (사업장이 달라도 대표자 동일한 경우 포함)
- 기타 충주시의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

2 **사업 신청 안내**

접수기간 : 2026. 2. 26.[목] ~ 3. 27.[금]

접 수 처 : 해당 점포 소재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접수방법 : 방문 접수 ※ 근무시간중. 접수마감은 18:00시까지로 한함

선정발표 : 2026. 4월 중 개별통보 [예정]

※ 선정여부는 개별통보되므로 신청서상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

□ 제출서류

구 분		제 출 서 류
사 업 신청시	소상공인 확인서류 (필수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업자등록증 사본(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★) 1부 2. 매출액 증명서류(전년도)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세사업자 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(간이과세자 포함)★ - 면세사업자 :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★ 3. 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(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) -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★(종업원이 없는 경우)
	신청서류 (필수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체크리스트 및 지원신청서[제1호 서식] 2. 사업계획서[제2호서식] 3. 개인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[제3호 서식] 4.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[제4호서식] 5. 청렴이행서약서[제5호서식] 6. 견적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, 반드시 2개 이상 비교견적서 첨부 7. 지방세 납세 증명서★(완납증빙 필요/ 체납, 미납 인정불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공동대표일시 모든 대표자들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각 제출 필수 8. 건축물대장★ 9. 직계간양수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변경전후 사업자등록증 각1부 10. 공동대표인 경우 통합위임장[제6호서식]
	우대대상 (선택)	착한가격업소, 백년가게 지정 업체 관련 증빙서류
사 업 완료시	보조금(지원금) 신청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체크리스트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(제7호서식) 2. 완료보고서(제8호서식) 3. 실적보고서(제9호서식) 4. 정산보고서(제10호서식) 5. 보조사업자 관리카드(제11호서식) 6. 지방세 등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동의서(제12호서식) 7. 지출증빙서류(전자세금계산서, 계좌이체입금증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좌이체관련 입금자·수령자 성명, 계좌번호, 날짜 확인가능해야함 8.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(대표자명의) 9. 시공업체 납품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10. 공동대표인 경우 통합위임장(기타서식5)
	해당자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옥외간판교체의 경우 옥외광고물표시 허가증(신고증명서) 또는 비대상확인서 2. 건물주 시설개선 동의서 (건물 현상변경 수반시)

※ 제출서류중 ★표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(제4호서식) 제출시 생략 가능

3

추진 절차

① 공고	사업 공고	· 사업 공고
② 신청 및 선정	신청서 제출 (소상공인→읍면동)	·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 접수(방문) · 접수처 : 점포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
	심사 및 선정	· 읍면동 현장 등 자체 심사 및 서류 송부(읍면동→시) · 심사완료 후 개별통보(시) -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업체 선정
③ 사업 시행	점포환경개선 시행 (소상공인)	· 점포별 환경개선사업 시행(사업계획서대로 진행) ※ 옥외간판교체시 옥외광고물 표시 법적요건 반드시 준수
④ 지원금 지급	비용 지급 (소상공인→제작업체)	· 소상공인 사업주가 사업비 전액(부가세 포함)을 제작업체에 지급
		☞ 계좌이체 원칙 ※ 카드 결제, 간이 영수증, 현금, 어음지급 인정불가
	지원금 신청서 제출 (소상공인→읍면동)	· 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(대금 지급 증빙서류) 제출 ※ 8.31일까지 제출(기한내 미제출시 지원금 지급 불가)
		☞ 구비서류 : 보조금 교부신청서, 완료보고서, 실적보고서, 정산보고서, 보조사업자관리카드, 지출증빙서류, 통장사본,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, 납품서 등 ※ (옥외간판 교체시) 추가서류 제출 -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증명서(허가증) 또는 비대상확인서 * 미제출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
	현장점검 및 서류제출 (읍면동→시)	· 사업수행상태 현장 점검 및 서류 제출(읍면동→시)
지원금 지급 (시→소상공인)	· 필요시 점포 현장점검 · 증빙서류 등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	

4

신청시 유의사항

- 서류 제출 : 총 2회(신청 시 : 지원신청서 / 완료 시 : 보조금교부신청서)
-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님
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 지원
- 지원 선정 취소
 -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
 -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
 -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
 - 타업체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
 -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 - 신청업체에 휴·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
 - 사전 승인없이 제작업체,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
 - 허위·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
-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및 포기
 - (사업변경) 사업변경신청서 제출 : 담당자 사전 승인 필요
 - (사업변경) 제작비 상향의 경우 : 지원금 변동되지 않음
제작비 하향의 경우 : 지원금 감액 변경됨(변경 공급가액의 80%)
 - 지원포기의 경우 포기신청서 제출
- 외주업체(시공·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) 선정
 - 추진과제와 연관된 '업체', '종목'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.
 -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시에는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를 선정해야함

□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

- 위법·부당한 방법(과대·허위견적, 대납 등)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
-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, 금품·향응제공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시)
- 향후 지원배제(금액과 횟수,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)
 - ※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

□ 제작비용 입금 및 지원금 지급관련 유의사항

- 제작비용은 대표자(또는 법인)명의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처리를 원칙으로함 (가족관계포함 제3자 거래 불인정)
- 지출증빙은 계좌이체확인증으로 가능하며,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.
-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,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.
-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
-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업완료 현장 점검 및 서류 확인 후 지급

□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

- 선정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
 - ※ 제출서류 : 관련서식(지원금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참고)
 - ※ 지출증빙 : 계좌이체확인증
-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,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,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 결정 취소함. (현금지급 및 카드결제는 인정하지 않음. 지원금 지급 불가함)

□ 기 타

- 접수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
-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
-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총주서의 판단에 따름

붙임1

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」 소기업 규모 기준(업종별 평균매출액 등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	
1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	
2. 1차 금속 제조업	C24		
3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	
4. 음료 제조업	C11		
5. 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	
6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	
7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	
8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	
9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	
13.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	
15. 가구 제조업	C32	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	
17. 수도업	E36		
18. 운수 및 창고업	H		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
19. 금융 및 보험업	K		
20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	
21. 광업	B		
22. 담배 제조업	C12		
23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	
24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	
25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	
26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	
27.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	
28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	
29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C31		
30. 기타 제품 제조업	C33		
31. 건설업	F	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	
32. 도매 및 소매업	G		
33. 정보통신업	J	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	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(E36 제외)	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	
35. 부동산업	L		
36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	
37. 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R	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	
41. 교육 서비스업	P	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	
43.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)	S(S94 제외)		

<비고>

-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-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

붙임2

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제외대상 업종 (정책자금 제외업종 준용)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『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 등)
56211	일반유희주점업
56212	무도유희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
표준산업분류	업종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	흥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 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